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41호 2014. 9. 15.(월)

【조 례】

【규 칙】

제471호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훈 령】

제242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5

【예 규】

【고 시】

제2014-124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문 9

제2014-125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문 11

제2014-126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문 13

제2014-127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고시 15

제2014-128호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 시행계획 승인고시 17

제2014-129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20

제2014-131호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

【공 고】

제2014-1139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8

제2014-1140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31

제2014-1143호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4

제2014-1145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7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9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71호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본문 중 “각 국·단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을
“국장·단장·국 주무과장 및 담당관·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
결
사
항

공주시 ○○조례(규칙) ○○개정조례(규칙)안

제 안 자	○○ 과 (부서장명)
제안연월일	20 . . .

기획담당관 심사를 마칩

검 토 의 견 서

조 례 명					
종 류	제정 () 개정 () 폐지 ()				
의 결 일	. . .	이송일	. . .	재의 기간	
근거법령	○○○법 제○조				
소관부서			관 련 중앙부처	부(원·처·청) 국(실) 과	
제·개정·폐지 이 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9월 15일

공주시 훈령 제242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환경미화원의 소속부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정수책임 요구 및 예산편성요구, 인사발령, 근무지 배치 등에 관해서는 청소행정 관련부서에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제외)

(단위: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순노무										도로 보수 원	환경 미화 원	비 고
		소 계	시설 장비 유관리	현장 공사 작업	현장 단속 감시	상하 수도 검침	진료 보조	의료 급여 관리	직업 상담	통역	단순 조무			
총 계	170	81	11	8	2	13	16	2	2	5	22	11	78	
소계(본청)	112	47	5	8	2	13		2	2	5	10	11	54	
시 담 당 관	3	3								1	2			인터넷신문 등 편집 및 홍보 1, 시장부속실 1, 통역1
기 담 당 관	1	1									1			부시장부속실 1
인 담 당 관	1	1									1			기록물관리 1
사 회 과	3	3						2	1					의료급여관리 2,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
복 지 과	3	3	3											화장시설운영관리 3
회 계 과	3	3									3			청사환경정비 3
관 광 과	4	4								4				통역 4
경 제 과	1	1							1					직업상담사 1
건 설 과	11											11		도로보수원 11
교 통 과	4	4		2	2									가로등수리 2, 정차단속 2
환 경 과	1	1									1			환경개선부담금 보조 1
청 소 과	55	1									1		54	환경미화원 54, 재활용품수거운반 1
수 도 과	21	21	2	6		13								시설관리 2, 누수수리 4, 상하수도 준설 2, 상하수도검침 12, 상하수도세 입보조및요금상담 1
토 지 과	1	1									1			새주소사업보조 1
의 회 사 무 국	2	2									2			의원사무실 1, 의장부속실 1
소 계 (직속기관)	24	24	4				16				4			
보 건 소	17	17					16				1			한방진료보조 7, 예방접종 2, 치위생사 2, 건강생활실천사업 1, 이동목욕사업 1, 금연상담지도 1, 물리치료 1, 임신 부영유아관리보조 1, 방문민원안내 1
농 업 기 술 센 터	7	7	4								3			농기계수리 4, 토양검정실 1, 가축질병진단실 1, 조직배양실 1
소 계 (사업소)	8	8	2								6			
관 광 경 영 사 업 소	4	4	2								2			공산성관리 1, 고분군관리 1, 매표 및 안내 2
시 도 서 관	1	1									1			청사환경정비 1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도로 보수 원	환경 미화 원	비 고
		소 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현장 공사 작업	현장 지도 감독 감시	상하 수도 점검	진료 보조	의료 급여 관리	직업 상담	통역	단순 조무			
종합사회복지관	3	3										3		복지프로그램운영보조 1, 구내식당 영양사 1, 구내식당조리보조 1
소 계 (읍·면)	24												24	
유 구 읍	4												4	환경미화원 4
이 인 면	2												2	환경미화원 2
탄 천 면	2												2	환경미화원 2
계 룡 면	3												3	환경미화원 3
반 포 면	3												3	환경미화원 3
의 당 면	2												2	환경미화원 2
정 안 면	2												2	환경미화원 2
우 성 면	2												2	환경미화원 2
사 곡 면	2												2	환경미화원 2
신 풍 면	2												2	환경미화원 2

2. 청원경찰의 정수(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명)

부서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소 계	지방2 하천 감시	공원 녹지 감시	주정차 반속	과적 차량 단속	문화재 보호 감시	
총 계	31	13	16	9	1	2	2	2	2
소 계 (본 청)	22	6	14	9	1	2	2		2
회 계 과	2	2							
건 설 과	2		2				2		
산 림 과	2								2
도 시 재 생 과	1		1		1				
교 통 과	2		2			2			
수 도 과	4	4							
안 전 관 리 과	9		9	9					
소 계 (사업소)	9	7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관광경영사업소	6	4	2					2	
종합사회복지관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수책정 요구 및 승인)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조(정수책정 요구 및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환경미화원의 소속부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정수책정 요구 및 예산편성요구, 인사발령, 근무지 배치 등에 관해서는 청소행정 관련부서에서 한다.</u>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안길 7-3(교동) 외 4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길 102-2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길 7-3 (교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특성 복합 반영
2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길 101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길 7-5 (교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특성 복합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길 192-2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길 57-4 (교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삼봉길 504	충청남도 공주시 삼봉길 45-3 (삼봉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특성 반영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763-4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33 (신기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을 활용
6	충청남도 공주시 소죽동 190-1, 189	충청남도 공주시 남도리길 24-23 (소죽동)	2014.09.01	신축	20100112	대지가 넓어 노인들이 다리를 가늠하며 걷기용으로 인해 남북하게 만든다 리번호가 있어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7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285-15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109 (신동동)	2014.09.01	신축	20100202	지역특성과 원주민 호칭 반영
8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513-4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242-5 (신동동)	2014.09.01	신축	2010020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598	충청남도 공주시 치미리길 74 (신동동)	2014.09.01	신축	2010020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225-15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110 (금흥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11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12-5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길 47-20 (금흥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원주민 호칭 반영
12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13-3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길 51-19 (금흥동)	2014.09.01	신축	20100112	지역명을 명칭과 원주민 호칭 반영
13	충청남도 공주시 평리동 254-2	충청남도 공주시 평리동 105 (평리동)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하여 통일성있고 주민이 편리하다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곡리 487-3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곡동수동길 52-58	2014.09.01	신축	20100630	마을이 넓어 고가방이 마치 동쪽을 면하며 사용하는 용도와 비슷하다 하여 용수동말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추가
1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272-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18	2014.09.01	신축	20100112	방랑자를 관통하는 길이란 상징의미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318-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18	2014.09.01	신축	20100112	오랑캐 마을에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다 있어 용수동말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473-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민안리길 68	2014.09.01	신축	20100112	전반 서민들을 끌러오는 서당과 유서한가원이 있었다하여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9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9	2014.09.01	신축	20100202	전통 마을이 아름답고 정취가 있어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46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신선진길 34-40	2014.09.01	신축	20131023	전통 마을이 아름답고 정취가 있어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4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18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4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251	2014.09.01	신축	2010020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506-3, 46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19-61	2014.09.01	신축	20100112	마을이 아름답고 정취가 있어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44-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39-4	2014.09.01	신축	20100202	마을이 아름답고 정취가 있어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4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85	2014.09.01	신축	20100112	마을이 아름답고 정취가 있어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3-2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46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292-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268-22	2014.09.01	신축	20100112	승리마을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8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224-36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8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4-9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85-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4-10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7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9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22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812-21	2014.09.01	신축	20100112	신촌 마을을 기념으로 하여 의정마을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하여 의정마을로 부여
3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6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2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73-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2066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199-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67-43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57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1239-90	2014.09.01	신축	20100202	공주 지역명 반영 (충남 대표 신촌 반영)
3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265-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225-21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추풍리 307-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봉정리 60-17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551-7, 551-10, 594-1, 59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795-13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3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551-7, 551-10, 594-1, 59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97	2014.09.01	신축	20100202	지방명 반영
4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36-10, 37-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102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4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37-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104-1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을 명칭 활용
4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51-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31	2014.09.01	신축	20100202	신촌 마을을 기념으로 하여 신수동말로 부여
4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33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78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과 원주민 호칭 반영
4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277-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187-12	2014.09.01	신축	20100202	행정 지역명과 원주민 호칭 반영
4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29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80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과 원주민 호칭 반영
4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34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북서리 99-6	2014.09.01	신축	20100112	행정 지역명과 원주민 호칭 반영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웅진로 180 (중동)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변경주소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17-4, 118-15, 119-5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17-3, 117-4, 118-15, 119-5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로 180 (충동)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로 180 (충동)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8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80, 81, 82, 8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80, 81, 82, 8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길 147-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길 149	2010.01.12	보물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건물번호 합병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8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80, 81, 82, 8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길 14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길 149	2010.01.12	보물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건물번호 합병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11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110-5, 11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성매길 33-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성매길 33-1	2010.01.12	해당 지역미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단치면 남산리 690	충청남도 공주시 단치면 남산리 689, 690	충청남도 공주시 단치면 안골길 27	충청남도 공주시 단치면 안골길 27	2010.02.02	해당 지역미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9-4, 19-29, 29-5, 170-5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7-1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길 5 (금성동)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길 5 (금성동)	2010.01.12	지역특성 반영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3-11, 593-1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3-12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2길 4-1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2길 4-1 (신관동)	2010.01.12	해당 지역미를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835 외 7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200, 139-2, 200-1, 20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835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615-1	충청남도 공주시 상촌길 45-3(봉정동)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08	충청남도 공주시 치미마을길 74 (신관동)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199-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신성말길 67-43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 46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바위배기길 7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89	충청남도 공주시 남다리길 24-23 (소학동)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102-2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안길 7-3 (교동)	2014.09.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102-1, 102-3, 104-2, 104-4, 106-13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안길 7-1 (교동)	2014.09.01	건물말소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고시

고시 제2014-127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주시장 (직인)

1. 정정내용

○ 소하천 지정(변경) 내용

수계 (水系)명	당 초				변 경 (정정)				지정(변경)사유
	소하천명	소하천구간		연장 (m)	소하천명	소하천구간		연장 (m)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용성천	구르천	이인면 만수리 4	이인면 만수리 337-5	1,660	구르천	이인면 만수리 124-1	이인면 만수리 337-5	1,060	기존소하천 600m 남공주 일반산업단지지구 편입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 지형도면 변경 내용

종 류	하천명	변경내용	지형도면 변경사유
소하천 지정 변경	구르천	“소하천 지정(변경)내용 참조”	소하천 일부구간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구간내 편입

2. 변경사유 :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재 내용 변경

3. 기타사항 : 열람서류(공주시 안전관리과)

고 시

충청남도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창조자원화사업에 공주시 유구읍이 선정되어 유구읍의 농촌문화와 전통적인 직물산업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진행중인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 주 시



1. 사 업 명 :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 사업
2. 사업목적 : 유구 근대문화유산 역사·문화적 가치 재발견, 문화와 축제지역 창조 역량강화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일원
 - 나. 사업개요
 - 콘텐츠 개발

- 사진, 영상, 이야기 등 본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수집
- 유구섬유산업구조를 보여주는 기반자료, 스토리보드 등 제작
- 유구읍에 남아있는 근현대관련 건축물, 유물, 기억등 발굴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섬유공장거리 중심의 문화거리조성
- 유구섬유역사를 모티브로 한 벽화작업, 포토존쉼터 설치

○ 작가레지던시 사업을 통한 예술적 콘텐츠 개발

- 전통시장 내 장옥활용, 작가 체류 전시 및 예술활동전개
- 주민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및 워크숍진행

○ 문화체험행사진행 : 개발된 콘텐츠 발표 및 홍보 등

4. 사업비 소요액 : 9.5억원(도비 4.75, 시비 4.75)

5. 사업 예정기간 : 2013년 ~ 2014년(2년간)

6. 사업의 효과 : 유구읍의 농촌문화와 전통적인 직물산업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여 다른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관광과 ☎ 041-840-8093)

※ 대상사업 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금 액
위탁 용역비	기초자금	47,000
	운영비	56,000
	인건비	96,000
기반 시설	문화예술 거리조성	250,000
콘텐츠 개발	Data Base구축 콘텐츠개발	145,000
	생활사박물관 콘텐츠개발	95,000
	장비구입(임대)	25,000
섬유산업관련 예술적 콘텐츠 개발	콘텐츠개발 지원 및 매입	127,000
홍보 전시 이벤트	홍보이벤트 및 전시	80,000
예비비	역량강화 및 재경비	29,000
합계		950,000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공주시 제2012-121호(2012.01.0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변경이 있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의거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15일

공 주 시 장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유구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개발방법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공영개발

○ 주요업종

- 당초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에 한함)
가구 제조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 변경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가구 제조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나. 면적 : 95,910.9㎡(단지조성 87,789.8㎡, 신국도32호선 8,121.1㎡)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0년 9월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643	17,986.6	3	505	5,704.5	-	-	-	3	1,138	12,282.1
중로	2	1,069	11,854.6	-	-	-	-	-	-	2	1,069	11,854.6
소로	4	574	6,132.0	3	505	5,704.5	-	-	-	1	69	427.5

※ 신국도32호선부지내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제외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440	소로1-3	소로3-3	일반 도로		'07. 5.1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629	중로2-5	중로3-5	일반 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12 (425)	중로3-6	중로1-2	일반 도로		'07. 5.15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 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44	중로3-6	중로3-5	일반 도로		'08.10.2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69	중로3-5	자카드일반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08.10.20	

※ ()안은 도로 전체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백교리 619차 일원	2,066.2	-	2,066.2	'08.10.20	

2) 공간 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4,057.1	-	4,057.1	'08.10.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소로1-3호선 동측	531.2	-	531.2	'08.10.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신국도 32호선 양측변	1,389.1	-	1,389.1	'08.10.20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백교리 628도 일원	231.1	-	231.1	'08.10.20	

3)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하천	소하천	백교리 622도 일원	백교리 622도 일원	-	0.166	4.4~4.8	689	'08.10.20	도로와 중복결정 (A=141㎡)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95,910.9	-	95,910.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B1	B1	22,893.4	①	백교리 603장	3,714.4	-
			②	백교리 604장	2,216.8	-
			③	백교리 605장	2,546.5	-
			④	백교리 607장	4,026.8	-
			⑤	백교리 606장	3,397.7	-
			⑥	백교리 608장	3,683.2	획지분할가능 (1,841.6m ² /1,841.6m ²)
			⑦	백교리 609장	3,308.0	-
B2	B2	11,050.5	①	백교리 610장	3,666.3	획지분할가능 (1,903.9m ² /1,762.4m ²)
			②	백교리 611장	3,671.5	-
			③	백교리 612장	3,712.7	획지분할가능 (1,974.4m ² /1,738.3m ²)
B3	B3	11,754.0	①	백교리 613장	3,926.1	획지분할가능 (2,195.0m ² /1,731.1m ²)
			②	백교리 614장	3,926.8	-
			③	백교리 615장	3,901.1	획지분할가능 (1,725.6m ² /2,175.5m ²)
B4	B4	10,026.9	①	백교리 616장	3,406.7	-
			②	백교리 617장	3,311.0	-
			③	백교리 618장	3,309.2	획지분할가능 (1,650.2m ² /1,659.0m ²)
B5	B5	1,986.5	①	백교리 601장	1,986.5	-
B6	B6	3,269.2	①	백교리 602장	3,269.2	-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B7	B7	2,066.2	①	백교리 619차	2,066.2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용지 (B1~B6)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차 장 용 지 (B7)	유구읍 백교리 619번지 일원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구역내 가각부	○ 차량출입 불허구간 (10m) 지정	○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금학동 105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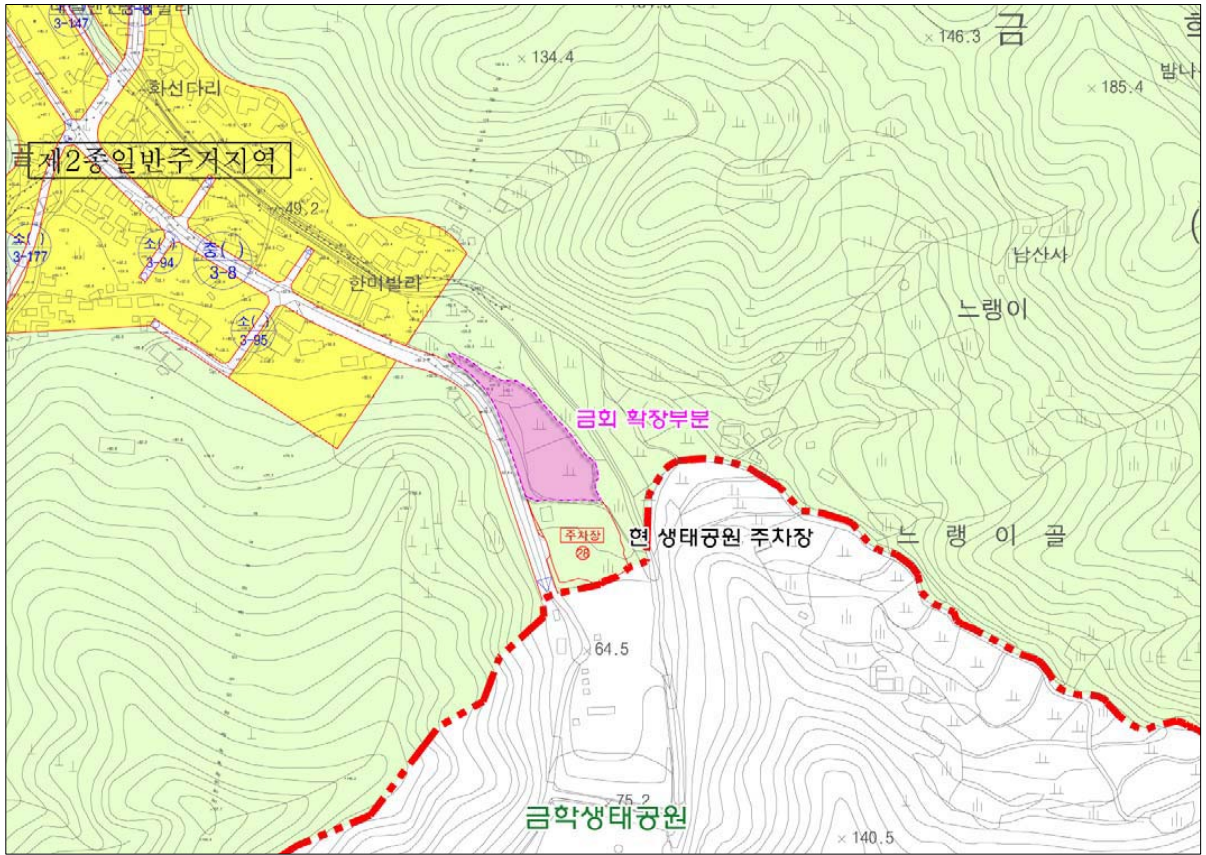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0	교통시설 :주차장	공주시 금학동 106번지 일원	3,150	증)4,238	7,388	'11.8.1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재생과 840-855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4. 편입필지조서(금회 확장 부분)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명
합계	7필지			4,532	4,238	
1	공주시금학동	104	전	251	220	공주시
2	공주시금학동	105-1	답	2,661	2,630	공주시
3	공주시금학동	105-2	전	376	376	고시환
4	공주시금학동	105-3	전	879	879	고시환
5	공주시금학동	105-5	전	52	52	고시환
6	공주시금학동	105-6	전	276	50	고시환
7	공주시금학동	105-7	전	37	31	고시환

공주시 공고 제 2014-1139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조례의 제정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개정되어 [별표2]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이 폐지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명시되었으므로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경제과(경제정책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840-8286 / FAX: 041-840-232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14-1140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조례의 제정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개정되어 [별표2]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이 폐지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명시되었으므로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 :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경제과(경제정책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840-8286 / FAX: 041-840-232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4 - 1143호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2005. 4. 18. 제정 공포 후 운영 실적이 없고 ‘14. 1.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중적 등록규제인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 개선

2. 폐지 후 대안

- 30천㎡미만 :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공장입지 가능
- 30천㎡이상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공장입지 가능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재생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8550 FAX : 041) 840 - 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4 - 1145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중적·관행적 등록규제 정비로 기업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안 13조)
-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세부기준 삭제(안16조) : 등록규제 정비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19조)

- 임목축적 및 구성과 표고 산정방법 명확화 : 산지관리법 준용
- 타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분할제한 면적 삭제 (안 23조)
 - 건축법에서 정하는 녹지지역 200㎡삭제 : 등록규제 정비
-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등 건축제한 별표 정비 (별표1~별표25)
 - 행위제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순서와 조례 별표 순서를 일치시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
 -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입지조건외 호수산정 기준 완화 (당초 공동주택 1동을 1호 → 세대수를 1호로 변경)(별표24호)
-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업무 조정 (안 5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재생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8550 FAX : 041) 840 - 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를 “충청남도지사” 로, “도시관리” 를 “도시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를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중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의” 를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 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 를 “허가” 로, “다음” 을 “영 제53조” 로 한다.

제17조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를 “요건을” 로, “한정” 을 “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를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지의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 경사도가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본문 중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분할제한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2와” 를 “별표 1과” 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의” 를 “거목·더목 및 안마시술소” 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의 규정에” 를 “법 제 76조에 따라” 로, “자연취락지구” 를 “자연취락지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호 중 “별표 3과” 를 “별표 2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4와” 를 “별표 3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5” 를 “별표 4”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6과” 를 “별표 5와”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7” 을 “별표 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 8” 을 “별표 7”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별표 9와” 를 “별표 8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0과” 를 “별표 9와” 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11” 를 “별표 10”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별표 12와” 를 “별표 11과” 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별표 13과” 를 “별표 12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별표 14와” 를 “별표 13과” 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별표 15” 를 “별표 14” 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별표 16과” 를 “별표 15와” 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별표 17” 을 “별표 1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별표 18” 을 “별표 17” 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별표 19와” 를 “별표 18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별표 20” 을 “별표 19” 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별표 21” 을 “별표 20”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별표 22” 를 “별표 21” 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별표 23” 을 “별표 22” 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별표 24” 를 “별표 2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별표 25” 를 “별표 24”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 을 “도로변” 으로, “너비 2미터” 를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로 한다.

제37조 중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으로” 로 한다.

제39조제4호 중 “병원 및 장례식장” 을 “병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0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및” 을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 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제4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4조 중 “해당”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중 “도시계획” 을 “도시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기능)” 을 “(업무)”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은” 을 “업무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을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53조제4호 중 “도시계획” 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으로, “회의에 부친” 을 “자문에 응하는” 으로, “자문” 을 “조언” 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선출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별표 26” 을 “별표 25” 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분과(전체)위원회

제5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등의 변경계획” 을 “등 도시관리계획”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및 「도시개발법」, 「도시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다. 기타 다른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제5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를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성하며” 를 “하며” 로, “건축위원회 위원” 을 “건축위원회 위원은” 으로, “이상이어야 한다” 를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별표 1부터 별표 2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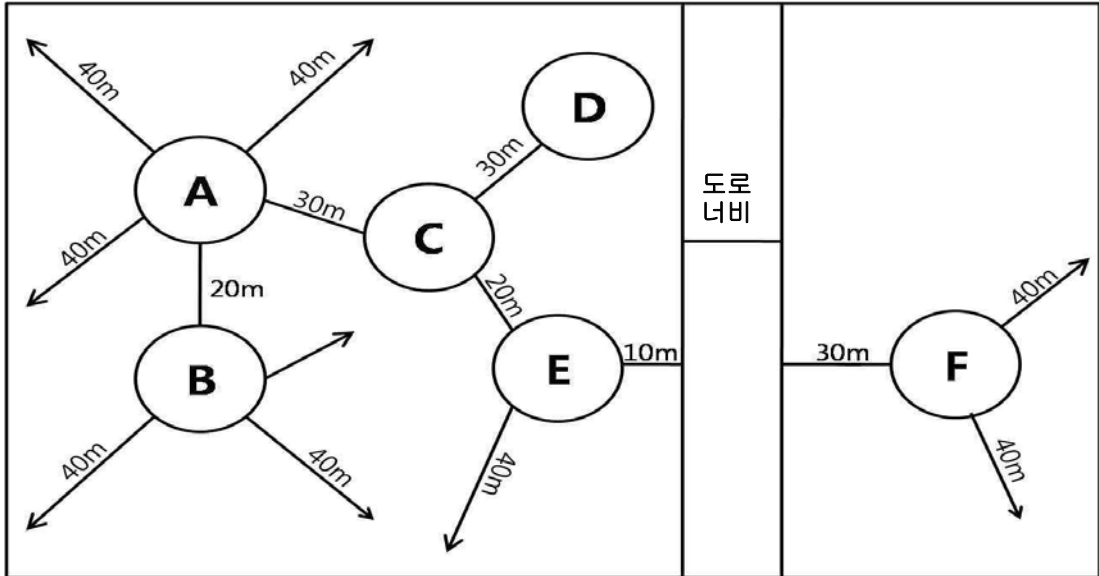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 기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26조제1항관련)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3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40m 이내	3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자연녹지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1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 거리산정에 있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 한한다.



<집단화 유도 예시 그림>

* 그림설명: 기준을 기존 개발전체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거리 40m 이내로 정한 경우

- 공장 A부터 F까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고, 공장 A부터 F까지 어느 공장이든 그 공장 부지에서 40m이내거리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 등을 건축 가능하고, 공장을 신축하면 그 공장으로부터 다시 40m 이내 거리에는 계속 신축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하나의 개발행위규모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집단화유도지역이 됨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호관련)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24층 이하로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별표 4 제9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 별표 4 제9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30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8호 및 제30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30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제30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소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14.3.2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 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제30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30조제1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뭇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제30조제1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

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주시에서 공주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제30조제1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
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4호의 제1종,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제30조제21호관련)

협의권자 및 허가권자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30조제2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제30조제23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3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사업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 등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평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

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25]

청렴서약서(제53조제4항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평·공정하게 심의한다.
3. 본인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3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공주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조제2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u>도시관리</u>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u></p>	<p>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 <u>충청남도지사</u>----- ----- ----- ----- ----- <u>도시관리계획</u> ----- -----.</p>
<p>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p> <p>1. ~ 6. (생략)</p>	<p>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 ----- ----- <u>사</u> ----- -----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u>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u></p>	<p>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u>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u></p>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
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
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
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
계가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4.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
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
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
의 및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
경사항) -----

----- 협의 및 공동
위원회의 심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

----- 영 제53조 ---
--.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요건을----- 대---
-----.

1. -----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
2. 대상지의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경사도가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등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별표 2와 같다.
2. 별표 3과 같다.
3. 별표 4와 같다.
4. 별표 5와 같다.
5. 별표 6와 같다.
6. 별표 7와 같다.
7. 별표 8과 같다.
- 8.

- 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 별표 9와 ----.
9. -----
- 별표 10 ----.
10. -----
- 별표 11과 ----.
11. -----
- 별표 12와 ----.
12. -----
- 별표 13과 ----.
13. -----
- 별표 14----.
14. -----
- 별표 15와 --.
15. -----
- 별표 16----.
16. -----
- 별표 17----.
17. -----
- 별표 18과 ----.
18. -----
- 별표 19--.
19. -----
- 별표 20----.
20. -----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5와 같다.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21. -----
----- 별표 22----

22. -----
----- 별표 23----

23. -----
----- 별표 24----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로변-----

-----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 지구 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

5. ~ 14. (생략)

<신설>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신설>

-----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으로-----

-----.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병원

5.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8호의 장례식장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의 건축물 : 40퍼센트이하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5. (생략)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4조(건폐율의 강화)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

-----.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생략)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후단 개정 2014.7.1.)

제52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생략)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설치) -----
----- 도시관리계획 -----

--.

제53조(업무) ----- 업무는 -----
-----.

1. -----

-----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

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별표 26의 청렴서약

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자문에 응하는 ----- 조언

제5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별표 25-----

서를 제출한 사람

⑤ (생략)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 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 (생략)

3. 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분과위원회) ① -----

-----.

1. 제1분과(전체)위원회

가. -----
----- 등 도시관리계획

나. 법 및 「도시개발법」, 「도시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다. 기타 다른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

가.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
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59조제
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
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

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② ~ ⑤ (생 략)

-----.

나. -----
----- 하
며--- -----

----- 건축위원회 위원은
-----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
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② ~ ⑤ (현행과 같음)